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620 발의연월일: 2022. 12. 2.

발 의 자:김성원·박대수·박덕흠

서일준 · 이채익 · 임이자

조명희 · 최춘식 · 추경호

태영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 야 함.

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,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.

이에 현행법의 '명기'를 '명확히 기록'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,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의3).

법률 제 호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0조의3 중 "명기"를 "명확히 기록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의3(조합장의 축의・부의	제50조의3(조합장의 축의・부의
금품 제공 제한) ① 지역농협	금품 제공 제한) ①
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	
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 • 부의	
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	
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, 해당	
지역농협의 경비임을 <u>명기</u> 하여	명확히
야 한다.	<u>기록</u> 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